

# < 2019 선미세법[기본서]> 추록

p560 “3.과세최저한” 내용 다음에 추가함.

## VI 종교인 소득

### 1. 종교인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 종교관련종사자(종교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②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③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 2. 종교인소득의 구분 및 소득금액의 계산

(1) 종교인소득의 구분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 ① 원칙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 비과세 소득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①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②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③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 종교활동비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④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⑤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사택 :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Max (실제 필요경비, 다음 표에 따른 금액)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6천만원 초과액의 20%

②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1)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

① 원천징수

- ① 원칙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 지급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가 가능하다(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② 예외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득의 귀속자(종교관련종사자)

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한다.

②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종교인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해야 함

(2) 구분기장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근로소득 및 비과세 종교인소득 포함)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3) 질문·조사

- ① 세무에 중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감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중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 ③ 세무에 중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조사를 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